

## 第 2 會議 討論要旨

申瓚秀(公認會計士): 本主題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問題點을 分析하시고 나름대로 評價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南宮 鎬卿 教授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爭點에 대해서는 그 歷史的인 考慮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먼저 稅務士와 公認會計士間의 職務에 관한 紛爭이 언제부터 생겼느냐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한 다음에 그 紛爭의 對象과 그 問題點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見解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稅務士와 公認會計士의 職務紛爭은 法人稅納付納稅制度가 實施된 이후부터 아주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現在 法人稅法施行令中 法人에 대해서 稅務士나 公認會計士가 稅務調整을 해서 申告書에 첨부하도록 된 이 義務規定의 歷史性을 檢討할 必要가 있습니다.

에 당초 60年代에 公開法人의 法人稅를 申告할 때에는 公認會計士의 審査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왜 稅務業務를 公認會計士만 擔當하고 稅務士는 擔當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稅務士側에서의 反撥도 있었읍니다마는 이때의 審査는 常識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審査가 아니라 監査와 같은 內容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 問題는 더 이상 提起되지 않았읍니다.

그후 綠色申告制度가 施行됨에 따라서 역시 稅務士와 公認會計士가 稅務調整計算書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國稅廳이 法人調查業務를 全般的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公認會計士와 稅務士가 國家에 의해 認定된 資格者로서 하나의 公共機能을 발휘하여 公共職務를 擔當하도록 한다는 意味가 담겨져 있었읍니다. 그런데 討議當時 稅務監査라고 되어 있었읍니다만 監査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問題가 되었다시피 公認會計士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監査라고 하면 稅務士側에서 問題가 되니까 稅務調整으로 하자고 建議가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稅務調整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稅務調整業務가 所得源으로서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게 되니까 問題點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여기에서 討議되는 內容도 公認會計士가 稅務業務 즉 調整業務를 擔當하는 것은 違法하거나 不當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公認會計士가 稅務業務를 擔當하려면 稅務士會에 登錄하여 會費도 내고 教育도 받고 懲戒에 따르거나 責任도 져야 한다는 등입니다. 그런데 뒤로 오니까 公認會計士는 企業의 利害關係者이니까 稅務業務를 맡으면 안된다고 하는 論理를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번째 問題 즉 會計監査를 하는 사람이 稅務調整業務를 擔當하게 되면 獨立性이 喪失된다는 見解에 대해서 제 意見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公認會計士의 監査制度를 살펴 보면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獨立性이라

는 것은 그 被監査者에 대한 報酬라든가 隨意契約 즉 自由로운 契約과는 斷絶되어야만 완전히 保障되는데 現在의 稅務調整이라는 것이 納稅者의 委託에 의한 것이니까 이를 公認會計士에 맡기면 監査에 대해서 意見이 적당히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現在 稅務業務를 擔當하는 內容을 보면 대개 自己가 顧問을 맡아 보며 매월 報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會社의 稅務業務를 맡고 있는 것이 상당한 部分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會計監査報酬를 받아가지고 稅務業務를 맡고 있는 경우와, 그 顧問이 稅務業務를 맡고 있는 경우 중 어느 쪽이 더욱 이해관계가 큰 것이냐고 할 때 이는 더 따져 볼 것도 없을 것입니다. 會計監査라고 하는 것이 客觀的이고 獨立的인 資格으로서 하는 것인 만큼 그 報酬를 받는다고 해서 公認會計士의 意見이 흐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問題 즉 稅務士에서 現在 주장하는 바와 같이 稅務調整業務 등을 맡아 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稅務士에 登錄하여 會費도 내고 懲戒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問題는 公認會計士에게는 公認會計士會가 있으니 그것으로 充分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稅務士會에서는 稅務士는 公益을 위한 反面에 公認會計士는 私의 利害關係를 調整하는 立張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稅務士도 公務員이 아니라고 하는 點, 또 公認會計士가 그 利益을 調整하는 利害當事者中에는 一般消費者, 勤勞者, 債權者, 심지어는 國家까지 포함되고 있으므로 稅務者가 公認會計士보다도 더욱 公益을 위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公認會計士와 稅務士는 서로 協助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격변하고 있는 이 社會環境에서 不可侵的인 職務를 가지고 있다는 思考는 排除되어야 할 것이며, 또 利用者 中心으로 制度가 運用되어야지 制度自體를 中心으로 業務를 規制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宇澤(公認會計士) : 南宮 鎬卿 教授님께서 發表하신 內容中에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다 망라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강조해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는 部分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公認會計士가 하는 일을 보면 여러가지 證明, 解産登記 등이 있습니다만 역시 財務諸表에 대한 適正性與否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基本的인 機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社會가 점차 國際化되고 企業이 多國籍企業化됨에 따라 業務가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公認會計士가 財務諸表에 대해서 어떻게 attest하느냐 하는 것이 큰 課題로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韓國公認會計士會에서 提示한 會計監査基準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實施基準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會計監査를 어떠한 基準에 따라서 實施할 것이냐를 規定하고 있습니다. 企業들이 大企業化하고 多國籍企業化된 오늘날 일일이 傳票를 확인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監査計劃을 組織的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는 企業內의 内部統制가 어느 정도로 그 機能을 발휘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內部統制機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問題가 있는나 하는 것을 적절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企業을 하나의 큰 정글이라고 할 때 그 정글내의 길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또 어느 方向으로 가서 問題點을 적절히 파악하여 여러 利害關係人의 利益을 가장 잘 保護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公認會計士에게 주어진 使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企業이라고 하는 정글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法律的인 問題가 있을 경우에 물론 저희 公認會計士들이 問題點을 파악·제기하여 저희들의 專門知識下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解決策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밖에 顧問辯護士들이 하시는 일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正規監查節次의 하나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辯護士協會가 포함됩니다. 또한 評價를 해야 할 問題가 있을 때 評價自體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評價士에게 의뢰를 하며 證卷評價를 하게 될 때는 꼭 專門家의 意見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專門家의 意見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檢討를 해 보아서 그것이 과연 財務諸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評價해야 합니다.

위에서 公認會計士의 機能을 財務諸表의 適正性與否에 대한 監查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公認會計士는 企業內의 事情에 대해서는 특히 監查 直後에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결과 公認會計士의 機能이 企業診斷 등으로 擴大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現在로서는 稅務業務와 關聯하여 약간 問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公認會計士의 機能이 attest를 中心으로 經營, planning 등에 대한 助言 내지는 問題點 포착과 그 解決에 대한 諮問등으로 擴大되어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가 公認會計士의 主要한 業務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computer가 많이 發展하게 됨에 따라 公認會計士의 監查가 전에는 computer를 中心으로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around computer audit 방식이었지만 現在는 through the computer audit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去來가 國際적으로 이루어지고 企業이 多國籍化하게 됨에 따라 公認會計士의 機能도 더욱 擴大되어가고 그러한 가운데 公認會計士와 여타 類似法曹職能間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마찰은 社會變動의 앞으로의 趨勢와 거기에 따른 法曹 service에 대한 國民들의 要求를 적절히 展望하고 또한 法曹職能一般에 종사하는 분들의 公人的 機能을 考慮하여 國民에게 最少의 費用으로 最大의 service를 提供한다는 觀點에서 調整·解決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와 자주 거론되는 公認會計士와 辯護士, 稅務士間의 葛藤問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先輩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狼濫된 말씀이지만 매우 편협된 意識에서 비롯되는 利權問題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問題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國民에게 좀더 效率的인 service를 提供한다는 觀點에서 본다면 보다 나은 解決策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